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11. 7 선고 2023나123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11. 7 선고 2023나12376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가단5189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봉

피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원

담당변호사 서성숙

변론 종결2024. 7. 25.

판결 선고2024. 11. 7.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가단5189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와 소외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군산시 E 대 659.5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1. 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 7. 접수 제16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접수 제10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없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2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앞에 "그 소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쪽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사해행위로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인지 여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 건축된 813,247,800원 상당의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법률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매매계약의 대상은 이 사건 부동산이고, 소외 회사가 위 계약들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처분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위 법률행위의 대상에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이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원철

판사김경선

판사기희광